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46호 2020. 6. 29.(월)

공 고

- 2020년 외달도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개장----- 2

고 시

-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----- 3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고 제2020 - 1064호

2020년 외달도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개장

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 및「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」제4조에 의거 외달도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개장 기간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6. 29.

목 포 시 장

☐ 외달도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개장 기간 및 시간

○ 개장 기간 : 2020. 7. 11. ~ 8. 23. (44일간)

○ 개장 시간 : 09:00 ~ 18:00

※ 이용안내 : 목포시 관광과(061-270-3513)

목포시 고시 제2020-189호

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

최근 우리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(시내버스, 택시)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29일

목포시장

1. 행정조치의 대상자

가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* 및 운수종사자

* 시내버스운송사업자

나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* 및 운수종사자

*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

다. 위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(버스, 택시)을 이용하는 탑승객

2. 행정조치의 대상장소 : 목포시내 전역

3. 행정조치의 내용

가.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(시내버스·택시)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할 것

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나. 위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

다. 대상 제외

- 24개월 미만의 유아,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,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

※ 마스크는 방역마스크, 덴탈마스크, 면마스크 모두 가능

4. 적용시기 : 2020. 6. 29.(월) 00:00 ~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

※ 계도(유예)기간 : 2020. 6. 29.(월) ~ 7. 5.(일)

5. 이 고시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함

6. 근거법령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8호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3조 제1항 제9호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(2020. 05. 25.)

7. 문의사항 : 목포시 교통행정과(시내버스 061-270-8338, 택시 061-270-3328)

※ 본 행정조치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,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* 계도(유예)기간 내 위반은 제외.

※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 / 동시 제기 가능

-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,
-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